
 교육부		<h1>보도자료</h1> <p>2021. 1. 25.(월) 배포</p>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	2021. 1. 26.(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6.(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조명연 (☎ 044-203-6877) 사무관 박형수 (☎ 044-203-6546) 주무관 김가빈 (☎ 044-203-6317)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학교급식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포함되어 촘촘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게 된다.
 - 또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영양교사 1인 이상이 배치되며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인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적용규모 : 모든 국·공립 유치원(4,863개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개원 (55.5%) (2020. 2차 유치원 알리미 기준)

□ 교육부는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

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생략)</p> <p>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u><신 설></u></p>	<p>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 결정해야 -----.</p> <p>1. ~ 9. (현행과 같음)</p> <p><u>제2조의2(학교급식 대상) 법 제4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아 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u></p> <p><u>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식을</u></p>
<p><u><신 설></u></p>	<p><u>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① 법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급식을</u></p>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
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립·공립유치원의 경
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
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
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
육지원청을 말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
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